

# 「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5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5년 6월 10일 상정 · 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경제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,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골목형 상가 지정 및 지정 기준, 신청 방법(안 제2조 ~ 제4조)
-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(안 제5조)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(안 제6조)
- 골목형 상점가 변경 신청 및 지정 취소(안 제7조 ~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### 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### 6. 심사 결과: 「수정가결」

### 7. 수정안 요지

○ 안 제1조 중 “제2조제2의2호” 를 “제2조제2호의2”로 한다.

### 8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### 9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수정안 1부.

2. 「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수정안 대비표 1부.

3. 「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4. 「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1부.

[붙임 1]

##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445호 관련
--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6. 10.  
제 안 자 : 조례특위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안 제1조에서 인용 조문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의2호' 중 "제2조제2의2호"는 상위법령의 실제 조문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표기이므로 자치법규의 법적 정확성을 제고하고, 법령 인용 오류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지번호의 표기를 '제2조제2호의2'로 수정함.

### 2. 수정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
##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안 제1조 중 “제2조제2의2호”를 “제2조제2호의2”로 한다.

[붙임 2]

## 수정안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<u>제2조제2의2호</u>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<u>제2조제2호의2</u>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
# 「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첨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안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5. 5. 30.
- 회부일자 : 2025. 6. 9.
-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### 2. 제안이유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,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골목형 상가 지정 및 지정 기준, 신청 방법(안 제2조 ~ 제4조)
-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(안 제5조)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(안 제6조)
- 골목형 상점가 변경 신청 및 지정 취소(안 제7조 ~ 제8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서 “골목형상점가”에 대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,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, 개설 주기 및 주체,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시장의 특성별 구분, 개설, 관리,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, 안 제3조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을, 안 제4조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신청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.

- 안 제5조(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)에서 공동시설 등 환경개선, 공동마케팅, 공동상품, 디자인 개발, 상권 컨설팅, 문화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6조(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)에서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(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)에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, 안 제8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)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와 절차를 규정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나아가 평창군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(생 략)

2. “상점가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특성별 육성)**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, 개설 주기 및 주체,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, 개설, 관리,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**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**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#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44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5. 30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,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정 방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(안 제3조)
- 다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(안 제4조)
- 라.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(안 제5조)
- 마.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(안 제6조)
- 바.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(안 제7조)
- 사.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
- 2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

####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

(현시점에서 비용추계 어려움)

#### 다. 합의 :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의 되었음

[전통시장과-648(2025. 3. 6.)호]

#### 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25. 4. 25. ~ 2025. 5. 15.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  - 평창군 공고 제2025-670호, 경제과-22098(2025. 4. 25.)호
- 2) 규제심사 :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(2025. 5. 19.) 원안의결  
[기획예산과-7616(2025. 5. 20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6610(2025. 4. 25.)호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5910(2025. 4. 23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7632(2025. 5. 20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7931(2025. 5. 26.)호]

##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골목형상점가 지정)**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평창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,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,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,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평창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3조(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)**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

해서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.

**제4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)**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
2.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
3.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**제5조(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)**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등 환경개선
  2. 공동마케팅, 공동상품, 디자인 개발, 상권컨설팅
  3.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
  4.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, 사업비는 사업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)**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

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.

## **제7조(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)**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

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
2.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
3.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조직 및 대표자의 변경

## **제8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
2. 제3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3.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「행정 절차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,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호

## 골목형상점가 지정[변경]서

1. 상점가 명 :

2. 대표자 성명 :

3. 소재지 :

4. 면적·점포수 :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「평창군  
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
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평창군수

직인

[별지 제2호서식]

## 골목형상점가 지정(변경)신청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	
골목형 상점가 개요	명 칭	대표자 성명		
	소재지	전화번호		
	규모	토지 면적: $m^2$ , 건물 연면적: $m^2$ , 영업장 면적: $m^2$ , 점포 수: 개		
	구역	주소	면적( $m^2$ )	점포 수
	상세			
상인 조 직	명칭	대표자 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	
	설립일	회원 수		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「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평 창 군 수 귀하

첨부서류	1.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	수수료 없음
	2.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	
	3.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 각 1부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  $m^2$  ]

# 관계법령 발췌

#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 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·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
가.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

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2. “상점가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## 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 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(안 제5조)

- 공동시설 환경개선, 활성화 지원 사업 등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정 구역 및 개소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, 현시점에서 비용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장 전 해 순
연락처	(033) 330 - 2761